

나노융합기술원 운영세칙

제정 2007. 03. 01 개정 2015. 04. 27
개정 2013. 08. 23 전부개정 2020. 09. 1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독립채산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나노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기술원의 정식 명칭은 “나노융합기술원(National Institute for Nanomaterials Technology, NINT)”이라 한다.

제3조(설립목적) 기술원의 설립목적은 나노소재·재료 및 응용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장비 및 설비 이용지원을 기반으로 한 연구의 수행과 연구결과 사업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나노기술의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제4조(조직) 기술원에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표1의 하부조직을 둔다.

제5조(직제) 기술원은 별표1의 하부조직에 부서장을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소관 분야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원장) ① 기술원에는 기술원을 대표하는 원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기술원을 총괄하며 아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조직 구성 및 운영
2. 중장기 운영계획의 수립
3. 운영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인사 및 회계(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제7조(부원장)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임전결 기준) 기술원 각 부서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2를 따르고 대학의 위임전결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대학의 위임전결 규정을 따른다.

제9조(예산 및 회계) 기술원의 예산은 기술원의 자체적인 사업수입, 외부 수탁사업 및 연구과제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편성한다.

제10조(인력) ① 기술원에는 기술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인력을 둘 수 있다.

1.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2.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직원
3.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따른 연구계약직

② 원장은 기술원의 연구 및 사업 수행의 자문과 공동 활동을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기술원은 기술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 부총장,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학 교원 2인 이상의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원 운영세칙(지침 제외)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기술원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
3. 사업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술원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여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원의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12조(실무운영위원회) ① 기술원은 기술원 실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기술원 운영에 관한 제반 실무에 관한 사항
2. 기술원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3. 운영위원회 상정안건 심의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실무운영위원회는 부원장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원장은 부원장으로 한다.
2.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3. 간사는 경영기획팀 실무운영위원회 담당자로 한다.
4. 위원장 유고시 경영지원부장이 대행한다.
5. 회의 결과를 문서로 기록·보관한다.
6. 심의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지침 등)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기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센터장에 대한 경과조치) 나노기술집적센터구축사업이 종료되는 2009년 7월 31일까지는 나노기술집적센터구축사업관리지침에서 정한 사업총괄책임자를 센터장으로 임명한다.
3. (시행일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8월 2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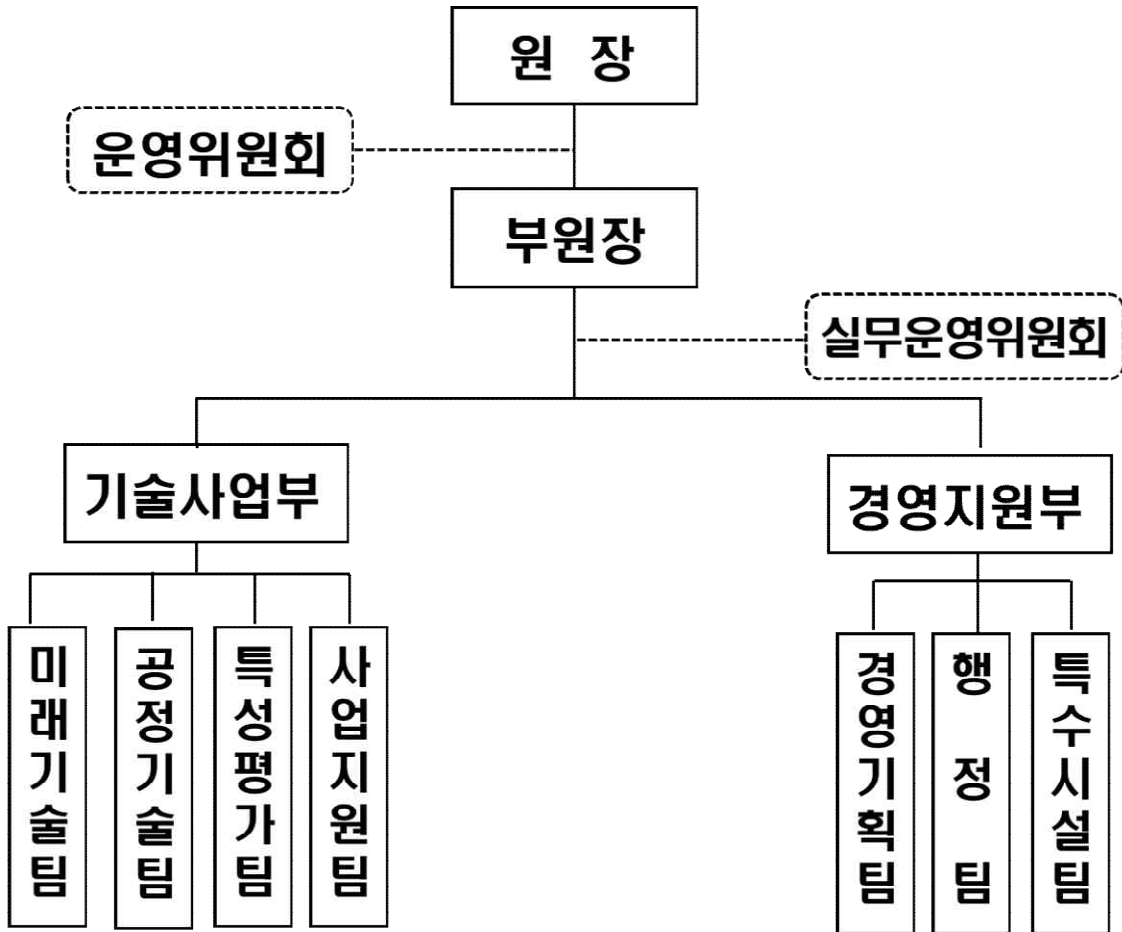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4월 2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9월 17일부로 전부개정, 시행한다.

(별표 1) 나노융합기술원 조직도



(별표 2) 위임전결기준표

위 임 전 결 기 준 표

구분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비고
			원장	부원장	부장	부서장	
공통사항	운영계획 및 업무추진	1. 주요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주요사항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3. 통상적인 업무진행	○	○		○	
	보고	1. 주요사항 보고 2. 업무 보고(주간 및 월간) 3.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운영위원회, 실무운영위원회, 기타 위원회 4. 외부회의 참석결과 보고 가. 부서장 이상 참석 나. 부서장(팀원)이하 참석	○ ○ ○			○	※ 위원장이 부원장인 위원회의 경우, 회의 결과는 원장보고 후 승인
	공문서 관리	1. 대내외기관 문서 접수 및 보고 2. 주간 접수문서 정리 및 보고	○			○	※ 모든 문서는 행정팀 문서대장 접수 후 업무관련 부서장이 보고(결재)
	타부서(기관)와의 업무협조	1. 정책적인 사항 2. 일반 사무적인 사항	○			○	
	소속직원의 복무	1. 직원 업무분장 2. 직원 근태관리 가. 부서원(팀원) 나. 부서장(팀장) 다. 부장 라. 부원장 3. 초과근무(시간외) 승인 및 관리	○	○	○	○ ○	
	출장	1. 국내출장 가. 부서원(팀원) 나. 부서장(팀장) 다. 부장 라. 부원장 2. 국외출장(전 직원)	○ ○	○	○	○	※ 겸직자의 경우 원 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결재선을 지정하고, 겸직부서장의 협조를 반드시 득해야 함

구분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비고
			원장	부원장	부장	부서장	
공통사항	기본품의 (과제)	1. 제세공과금 등의 정액지출 2. 500만원 미만 3. 500만원 이상	○			○ ○	
	기본품의 (예산)	1. 제세공과금 등의 정액지출 2. 공사비,임대차,물품구매 가. 500만원 미만 나. 5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3. 일반경비 가. 500만원 미만 나.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			○ ○ ○	